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교수평의원회 뉴스 레터

HP: hyufs.hanyang.ac.kr E-mail: hufs@hanyang.ac.kr 🗗 02-2220-0597

제7기 한양대학교 교수평의원회 [2019~2020학년도]

발행인: 조태제 편집인: 류수열 2021-1호[1월 4일]

제7기 교수평의원회 의장 인사 말씀

존경하는 교수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마감된 듯합니다. 이제 언택트, 사회적 거리 두기, 팬데믹, 확진자 등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 친숙해졌고, 마스크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조차 제대로 누리기 힘든 나날이지만, 우리 대학의 발전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노력과 헌신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BK 사업에서의 약진, 천경준 동문의 발전기금 100억원의 쾌척 등이 그것입니다.

대학자치의 활성화, 교육과 연구를 위한 환경의 조성 및 교권·복지의 확충이라는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출범한 제7대 교수평의원회가 활동한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대학의 한지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성과보다는 남아 있는 과제가 더중차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면서도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 자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교수평의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2019년 교평은 교원인사위원회 등 대학본부 위원 회에의 참가, 급여 2% 인상, 일반 대학원 폐강 기준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의 조정, 교수업적평가 항목에서의 전체교수연수회 참석 항목 삭제 등을 성 과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연말엔 교수정년퇴임식에 참석하여 오늘의 한양이 있기까지 수고를 다하신 퇴 임 교수님들께 전체 교수님을 대신하여 교평의 이름 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렸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지난해는 내내 교수업적평가 기준 조정이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교평은 대학본부와의 수차례 미팅을 통해 학과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2개 학과와의 최종적 협의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재단 우수등재지 게재 논문의 업적평가점수 1.5배 상향 조정,교수 흘수호봉으로의 승급시 승급심사 면제, 연구업

적 장려금 총액 규모의 전년도 대비 4.8% 인상 등 조그마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평은 지난달 23일 대학평의원회와 공동으로 '한 양대학교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의 가버넌스 등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총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박경진 교수(디자인대)는 총장평가제도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역설했고, 총학장선출제도와 관련하여 오제훈 교수(공학대)는 주요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총장선출시총장추천위원회 추천 절차 외에 정책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BK 평가 및 과제와 관련하여 계명찬 교수(자연과학대)는 논문 인센티브의강화 및 기준개선 등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토론에서는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총장선출제도의 안전성을 위해 대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특정 구성 단위가 선출과정에 이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장 임명시 단과대교수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향후 BK에의 대응을위해 관련 정보의 전면적 공개와 대학원 행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나타난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검토를 더하고 교평 의원 및 전체 교수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 본부에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현안적 주제에 대해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대 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 광장으로 발전시 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코로나 블루의 백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분과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커피 한잔 나누는 것은 그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평에 대한 교수님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감사를 드리며, 개나리가 피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두 손 모읍니다.

2021.1.1.

교수평의원회 의장 조태제 올림 [연락처: 교내 1307, 010-6249-1094, tjcho@hanyang.ac.kr, 제2법학관 606호]

교수평의원회 주요 성과 및 활동

I. 주요 성과

1. 교수 홀수호봉승급 실질심사 면제

- (1) 교수 홀수호봉 승급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급 함을 워칙으로 함
- (2) 적용 시기 : 2020년 9월 1일 승급대상자부터
- (3) 근거: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 개정

2. 2020 글로벌 한양 업적 장려금 지급 총액4.8% 인상

- 1) 연구업적우수교원 책임강의시간 대체 기준 활용 (1) 대상자 선정 기준
 - -2년간 연평균 업적장려금 취득률이 150%이상인 교원 : 연간 3시간 대체
 - -2년간 연평균 업적장려금 취득률이 450%이상인 교원 : 연간 6시간 대체

(※2021년부터는 전체 교원 수의 25% 범위 내에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기준을 변경함)

- (2) 대체 시기: 2021학년도 1학기와 2학기
- 2) 총 지급 예산 : 2019년 지급 총액 기준 4.8% 인상

Ⅱ. 주요 활동

1. 교수평의원회 정책세미나 개최

- 1) 주제: 한양대학교의 현안과 과제
- HYU 2020 총장중간평가: 박경진(디자인대 교수, 교수평의원회 부의장)
- 각 대학별 총장 선출 절차: 오제훈(공학대 교수,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원회 의원)
- 4단계 BK21-선정결과와 과제: 계명찬(자연과학 대 교수,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원회 의원)
- 2)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23일 사회과학대 615호
- 3) 주최: 한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원회
- ※ 발표문은 교수평의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2. '교수평의원회 규정' 일부 개정

- 1) 의결 : 2020년 12월 23일 교수평의원회 회의에 서 의결
- 2) 주요 사항
- (1) 평의원회 회의 방식 추가: 평의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코로나사태 등에서 보듯이 비대면 회의 방식 도입의 필요성 증가에 대응하고자 함.
- (2) 평의원 선출 단위의 조정: 현행 규정은 평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독립학부 및 대학원 소속 평의원은 모든 독립학부와 대학원을 통틀어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정 규정에서는 학문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독립학부 등의 교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독립학부와 관련 학문 분야의 단과대학의 교원 합동회의에서 평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여, 평의원 선출 단위를 합리화함. 다만, 시행일은 2022년 3월 1일로 하고, 그 이전에 교원 수 조정 여부를 각 단과대학, 독립학부 및 대학원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함.
- (3) 평의원 임기 조항의 조정: 평의원의 임기를 1회 한하여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함. 이는 보다 대학 사정을 잘 아는 분이 평의원을 맡도록 하고자 함.
- (4) 평의원 선출 방식 일시적 변경에 관한 부칙 규정: 코로나 확산에 따른 평의원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 개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8대 평의원(임기 2021.3.1.-2023.2.28.) 선출은 비대면 방식,즉 이메일 등 전자식 방식에 의해 선출할 수 있도록 함.
- 3. 신구 조문 대조표(다음 페이지)

현행 규정	개정 규정
	제4조(평의원의 선출)
제4조(평의원의 선출)	① 평의원은 <u>정년트랙 전임교원</u> (이하'교원'이라
① 평의원은 <u>각 단과대학, 독립학부, 대학원 소속</u>	한다) 중에서 <u>단과대학(독립학부 및 대학원을 포</u>
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 중에	함한다)의 교수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독립학부,
서 단과대학별 교수회 및 독립학부·대학원 교원 합	대학원, 기타 교육 및 연구 기관(이하 '독립학부
<u>동회의에서</u> 선출한다.	등'이라 한다)으로서 소속 교원 수가 30인 미만인
②- ④ (생략)	경우 평의원은 해당 독립학부 등과 관련 학문분야
⑤ 독립학부 및 대학원 소속 평의원은 모든 독립학	의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부와 대학원을 통틀어 1인을 선출한다. 다만, 독립	교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
학부 또는 개별 대학원의 교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소속 평의원의 수는 제4항에 따른다.	⑤ 독립학부 등의 교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소
<u>(6)</u> (水략)	속 평의원의 수는 제4항에 따른다.
	<u>(6</u> , ⑦ (생략)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u> 한하여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2회에</u>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평의원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평의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보선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보선
된 평의원의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연임 산정에	된 평의원의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연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② (생략)
제12조(의결)	제12조(의결)
①, ② (생략)	①, ② (생략)
③ (신설)	③ 평의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 전자적 방식으로 개회할 수 있다.
(신설)	부칙(2020.12.23.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2.3.1.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대
	평의원(임기: 2021.3.1.부터 2023.2.28.까지)은 이
	메일 등 전자식방식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
	<u>다.</u>

기타 주요 알림

1. 연구 실적 마일리지 활용 안내

대학본부는 2018.5.31.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 개정을 하면서 연구실적 마일리지제도를 폐지하고, 아울러 기존에 축적한 마일리지는 아래 표와 같이 1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교수평의원회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수차례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당초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으나, 아직 그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 중에는 아래와같이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해당 교수님께서는 이에 따라 그 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를 적절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상세한 내용은 교무처 문의 요망)

- 적용일: 전반기 업적평가 대상교원은 2018.1.1. 부터, 후반기 업적평가 대상교원은 2018.7.1.부 터 적용
- ■마일리지 사용 경과 조치: 승진, 정년보장, 교수 직급 짝수호봉 승급 최초도래 심사에서 1회에 한하여 부족한 점수에 대체하여 사용 가능
- ■보완제도(기준값 초과실적 활용안) 전반기 업적평가 대상교원은 2018.1.1.이후부터, 후반기 업적평가 대상교원은 2018.7.1.이후부터 창업, 병가, 질병휴직 신청시점까지 연구업적 연 평균 취득점수가 기준값의 150% 이상일 경우 에는 아래 기간의 연구 요건을 대체
- ① 기준값의 150% 이상 취득한 경우 1년 대체
- ② 기준값의 300% 이상 취득한 경우 2년 대체

2. 교수노동조합 설립 동향 소개

2020년 6월 9일부터 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학 교수(강사는 제외함. 강사는 교원노조법과는 별도로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도 개별 학교 단위로나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단위에서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 면)가 모태가 된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이 설 립신고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별 학교 단위에 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전국 10여개 대학 이 교수평의원회(교수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수노 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교원노조법과는 별개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수도 당연히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직원만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도 대표를 선출하여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여 대학 경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 대표와 협의할 수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충처리위원을 둘 수있습니다.

3. 전국 대학 교수 연봉 비교

(1) 출처 : 교수신문 기사(2020년 12월 15일)

(2) 제목 : 팍팍한 대한 현실...교수 연봉도 '동결'

(3) 링크:

 $\underline{\text{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8896}}$

-교수연봉 현황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8907

-부교수 연봉 현황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8910

-조교수연봉 현황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8912